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615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곽현준, 김정웅, 문종욱

피 고 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

담당변호사 신민호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E은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7.부터 2023. 8. 25.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전라남도 고흥군 G 답 4,000㎡에 관하여 2020.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F은 피고 E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20. 2. 17. 접수 제2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1) 망 A1)는 피고 E에게 2016. 5. 26.부터 2021. 3. 31.까지 합계 5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는 2023. 1. 6.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22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E은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나머지 대여금 290,000,000원(= 510,000,000원 -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한편, 피고 E은 위와 같이 망 A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0. 2. 6. 처인 피고 F에게 전라남도 고흥군 G 답 4,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 1) 피고 E은 망 A에게 2016. 6. 25.부터 2022. 12. 1.까지 대여원금 및 이자로 합계

553,640,210원을 변제하였고, 2023. 1. 4.부터 2023. 1. 6. 사이에 합계 70,000,000원을 변제한 후 대여금의 정산을 요구하여 2023. 1. 26. 13,000,000원을 변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대여원리금이 모두 완납된 것으로 하여 망 A로부터 합의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 받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망 A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2) 위 합의각서는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각서는 변제충당합의에 해당하여 위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3) 따라서 피고 F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도 원고들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A는 피고 E에게 2016. 5. 26.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26.,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6. 6. 29. 4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27.,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21. 3. 31.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5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E은 망 A에게 2016. 6. 29. 그 소유의 전라남도 고흥군 H 대 402㎡ 외 2필지 및 위 지상 단층주택 70.65㎡, 단층 창고 57.8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6. 8. 29. I 전 261㎡ 외 1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피고 E은 망 A에게 2016. 6. 25.부터 2022. 12. 1.까지 대여원금 및 이자 합계 553,640,210원을 변제하였고, 2023. 1. 4. 원금 20,000,000원, 2023. 1. 5. 원금 20,000,000원, 2023. 1. 6. 원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피고 E은 2023. 1. 9. 망 A에게 “2016. 5. 26.부터 2021. 3. 31.까지의 대여금에 관하여 2023. 1. 6.까지 변제된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 결과 미지급 잔액이 12,185,499원인데, 이를 2023. 1.

31.까지 지급할 예정이니 변제 완료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위 내용증명이 망 A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E은 2023. 1. 26. 망 A에게 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6) 피고 E은 2023. 1. 27. 앞선 정산과정에서 2020. 8. 2. 변제한 4,500,000원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정산한 결과 7,167,593원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망 A에게 보냈고, 이에 망 A는 2023. 2. 8. 피고 E에게 7,167,593원을 송금하였다.

7) 망 A와 피고 E은 2023. 2.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전남 고흥군 I 전 261㎡ 외 7필지에 대하여 2016. 8. 26.과 2016. 6. 29.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던 바,

채무자 E은 채권자 A에게 2023. 2. 8.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기에 채권자 A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쌍방 이면에 대하여 추후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각서 합니다.

단, A는 통장거래한 통장내역서를 2016. 6. 29.부터 2023. 2. 10.까지 제공하여 주기로 한다.

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3. 2. 8. 해지를 원인으로 2023. 2. 9.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부제소합의

1)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합의각서의 문언인 ‘쌍방 이건에 대하여 추후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표현이 추후 망 A와 피고 E이 대여금과 근저당권말소 등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시 부제소합의를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으로 망 A와 피고 E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A와 피고 E 사이에 2016. 5. 26.부터 2021. 3. 31.까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2023. 2. 8. 위 피고가 망 A에게 대여원리금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각서는 2016. 6. 29.자 및 2016. 8. 26.자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이 2016. 6. 29.자 및 2016. 8. 26.자 대여금 채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E이 망 A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 E은 망 A에게 둘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체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2016. 6. 29.’ 및 ‘2016. 8. 26.’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합의각서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가 2016. 6. 29.자 및 2016. 8.

26.자 채무에 국한되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망 A의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1)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3년 11월 27.일 사망하였다.